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사 건** 강행심 2019-462,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길 170-25 매점

**피청구인** ○○시장

청구인이 2019. 10.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5. 청구의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170-25 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의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이하 ‘청구의 성당’ 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확정판결(대법원2018두37601)에 따라 ○○면 ○○리 627-1번지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지’ 라 한다) 상에 종교 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청구의 성당은 2019.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지에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5. 청구의 성당에게 건축허가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 행복추구권의 방해, 통행 불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피해, 안전 저해 및 각종 비용 지출의 피해를 입고 있다.

나.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건축허가지 진입로인 현황도로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인이 제기한 판결에 패소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이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분인지 의문이 들며, 피청구인 업무담당부서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지 일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조수류 집단 서식지, 산림축이 형성된 지역, 멸종위기 육상동물 서식지로,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배된 처분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 및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다.

바. 이 사건 처분은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다시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청구인이 심판 청구 이후 청구 이유 변경, 추가 보충서면 제출로 주장을 보충하였다면, 건축허가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청구에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당부 역시 판단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최소 도로폭이 적용되지 않는 면 지역의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다.

나. 이 사건 개발행위규모는 3,000㎡ 이하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운영지침」이 배제되어 폭 4m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이 아닌, 개별 허가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부적합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사항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법규상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법규의 내용 그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자연환경보전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 간 마찰에 따른 피해는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113개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를 위한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 ○○면 ○○○길 170-25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의 성당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지에 종교 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고, 2019. 7. 5. 청구의 성당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0. 3.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6. 판 단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3자인 청구의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주장 내용에서 건축허가처분 이전에 이루어

진 개발행위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의 방해,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피해, 통행 불편,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피해, 안전 저해 및 각종 비용 지출의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실제 피해 발생이 불분명한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0. 1. 13.**

**강 원 도 행 정 심 판 위 원 회**